

2017.04.17

'한-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변경' 안내

1. 개요

- 관세청은 한-중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콩해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제출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.
- 기존에는 직접운송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만 했지만, 이번 발급기준 변경으로 일정한 경우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받을 필요없이 한-중 FTA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기존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위해 겪어야 했던 복잡한 행정절차가 일정부분 간소화되었습니다.

2. 주요사항

① 홍콩에서 적입되는 화물의 비가공증명서 제출기준 완화

현 재	개 선
화물이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는 경우 비가공증명서 반드시 제출 필요	적입이 발생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 시에는 비가공증명서 제출 면제 - 단, 상품의 품명, 포장수량 및 중량의 변동이 없어야 함

홍콩의 지정된 터미널

-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(1~9),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,
③ Super Terminal One,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,
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, ⑥ Asia Airfreight Terminal, ⑦ DHL Central Asia Hub

2017.04.17

'한-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변경' 안내

2. 주요사항

② 7일 초과하여 보관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

현 재	개 선
컨테이너 화물이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증명서 필요	7일 초과 보관 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(Seal) 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증명서 제출 면제

③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(중국>한국)(**17.4.10부터 적용**)

내용	유형	화물종류	보관 유무	발급 필요 여부
단일 통과선하증권(Single Through Bill of Lading) ¹ 발급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화물	Mode 1	컨테이너 및 벌크화물	보관 유무 불문	불필요
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	Mode 2	컨테이너 화물 ²	보관 유무 불문 홍콩에서 미보관	불필요
	Mode 3	벌크화물 ³	홍콩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 ⁴	불필요
			홍콩에서 보관	필요
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, 포장수량,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	Mode 4	컨테이너 및 벌크화물	보관 유무 불문	필요

1. "단일 통과선하증권(Single Through Bill of Lading)"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(출발지, 경유지, 도착지),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,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(Air Waybill 포함)을 의미한다.

2. 컨테이너 번호와 실(seal)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"일련의 운송서류"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.

* "일련의 운송서류"란 전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으로서,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 과정이 재화청단(중국→홍콩) 및 선하증권(홍콩→한국)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가 됨

3. 상품의 품명, 포장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.

4.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.

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(1~9),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, ③ Super Terminal One,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,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, ⑥ Asia Airfreight Terminal, ⑦ DHL Central Asia Hub

5. 적용 순서 :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(Mode 1 → Mode 2 → Mode 3 → Mode 4)

* (예)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 ~ 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

※ 비가공증명서 발급기관, 신청절차, 신청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한-중 FTA 홍콩 경우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

1. 서류명 : 비가공증명서(Certificate of Non-manipulation)

2. 발급기관 : 홍콩해관

3. 비가공증명서 교부(직접교부)

발급장소	해관 ‘환적화물’ 사무소 新界葵涌貨櫃碼頭南路63號 海關大樓7樓	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롤센터 赤鱗角香港國際機場 超級一號貨運站1樓
근무시간	월요일부터 토요일 09:00~17:00 (공휴일도 동일, 일요일 휴무)	24시간
전화번호	(852) 3152 0233	(852) 2116 2024

4.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(중국⇒한국) ('17.4.10.(월) 수입신고분부터 적용)

내용	유형	화물종류	보관 유무	발급 필요 여부
단일 통과선하증권(Single Through Bill of Lading) ¹ 발급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화물	Mode 1	컨테이너 및 벌크화물	보관 유무 불문	불필요
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	Mode 2	컨테이너 화물 ²	보관 유무 불문	불필요
	Mode 3	벌크화물 ³	홍콩에서 미보관	불필요
			홍콩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 ⁴	불필요
Mode 3	Mode 3	벌크화물 ³	홍콩에서 보관	필요
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, 포장수량,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	Mode 4	컨테이너 및 벌크화물	보관 유무 불문	필요

1. “단일 통과선하증권(Single Through Bill of Lading)”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(출발지, 경유지, 도착지),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,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(Air Waybill 포함)을 의미한다.

2. 컨테이너 번호와 실(seal)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“일련의 운송서류”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.

* “일련의 운송서류”란 전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으로서,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 과정이 재화청단(중국→홍콩) 및 선하증권(홍콩→한국)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가 됨

3. 상품의 품명, 포장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.

4.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.

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(1~9),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, ③ Super Terminal One,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,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, ⑥ Asia Airfreight Terminal, ⑦ DHL Central Asia Hub

5. 적용 순서 :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(Mode 1 → Mode 2 → Mode 3 → Mode 4)
※ (예)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 ~ 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

5. 신청 절차

- (신청시기)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
- (신청방법) E-mail, Fax,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'비가공 증명서'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
 - E-mail : fta_other_application@customs.gov.hk / Fax : (852) 3152 0183
 - 비가공증명서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

- a. 신청인의 사업등록증
- b. 통과선하증권(필요시)
- c. 원산지증명서
- d. 화물명세서(벌크화물, 화물통합,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)
- e. 화주(貨主)위임장(필요시)
- f. 홍콩 경유(환적)기간 동안의 보관기록(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)
- g.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(필요시)

신청비용

- 모든 '비가공증명서' 신청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비용을 납부
 -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, 서로 다른 운송 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 비용이 추가됨

종류	운송방식	처리방법	비용(HK\$)
A	항공/육로/해운으로 수입한 화물	화물통합(적출입)이 필요한 화물	625
B	항공으로 수입한 화물	화물통합(재포장 혹은 기타)이 필요	910
C	육로/해운으로 수입한 화물	화물통합(재포장 혹은 기타)이 필요	1,470
D	항공/육로/해운으로 수입한 화물	서류 심사	155

※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,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

※ 비가공증명서 발급관련 절차 등은 홍콩해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배포일시	2017. 4. 10.(월)	담당부서	FTA집행기획담당관실	
담당과장	유영한 042-481-3210	담당자	이승필 사무관	042-481-3211

홍콩 경유 화물, 한중 FTA 활용이 쉬워진다

- 관세청,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제출기준 대폭 완화 -

-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 활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**를 제출하는 기준을 10일부터 대폭 완화한다.
- 이전에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해야 하며, 이를 입증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.
- * 직접운송원칙: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운송 중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, 부득이한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보관 등을 허용하고 있음.
- ** 비가공증명서(Non-manipulation Certificate):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하역, 재선적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제3국에 있는 세관에서 확인해주는 증명서로서 직접운송의 입증서류로 사용 됨.
- 관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콩 관세청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'직접운송'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.

-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은 홍콩에서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(煥積)될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. 단, 상품의 품명·포장수량 및 중량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.
-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보관되는 날이 7일이 초과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(seal) 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.

1) 홍콩에서 적입되는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

현 재	개 선
화물이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는 경우 비가공증명서 반드시 제출 필요	적입이 발생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 시에는 비가공증명서 제출 면제 - 단, 상품의 품명, 포장수량 및 중량의 변동이 없어야 함

홍콩의 지정된 터미널

-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(1~9),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,
- ③ Super Terminal One,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,
-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, ⑥ Asia Airfreight Terminal, ⑦ DHL Central Asia Hub

2) 7일 초과 보관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

현 재	개 선
컨테이너 화물이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증명서 필요	7일 초과 보관 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(Seal) 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 증명서 제출 면제

- 현재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은 대부분 육로 운송을 통해 홍콩에 반입한 후 해상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작업이 발생하고 있다.

- 그동안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적입(積入)될 경우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
- 컨테이너화물은 적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.
-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하루 전까지 수출자가 홍콩세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.

□ 관세청은 복잡한 행정절차*가 간소화되고, 비가공증명서 발급비용(연간 165억 원**)도 대폭 절감되어, 한중 FTA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* 화물명세서 등 7종의 서류를 구비하여 물품 도착 1일 전까지 신청

** 연간 비용절감액(165억 원): 11만 6천 원(비가공증명서 발급비용)×142,315건('16년 비가공증명서 발급건수(2,076)+'16년 발급예로에 따른 미신청 추정건수(140,239))